

석유수입부과금 징수 유예

- 통상산업부 -

○ 통상산업부는 최근 정유업체가 환율 폭등에 따른 환차손으로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,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인도 악화 및 국제결제은행(BIS)의 자기자본 비율 준수노력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과 석유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, 시행키로 하였다.

-현재 원유도입분중 70%가 장기계약에 의해 도입되고 있고, 연말까지의 원유도입분에 대하여는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태로 아직까지는 원유도입 및 국내 석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,

- 외환시장 불안의 지속으로 신용장 개설 곤란 및 정유업체의 자금난 지속시 향후 원유도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번 대책을 수립케 된 것이다.

○ 우선 통상산업부에서는 정유업체의 원유수입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신용장개설 및 은행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재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추진하고,

-현재 원유수입시에 배럴당 1.7\$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석유 수입 부과금 징수를 2개월 정도 유예하고,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33일분을 비축토록 하고 있는 민간정유사의 석유비축의무량을 30일분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자금부담을 완화하며,

-현재 상황의 악화가 지속되어 민간 정유사에 의한 원유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될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정유사의 원유도입을 대행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원유도입의 어려움으로 석유수급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유사의 재고량 활용 및 수출분을 내수에 전용함과 아울러 강력한 석유소비절약 대책을 시행하는 등 석유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, 시행할 계획이다.

IMF금융위기가 정유업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

1. 정유업체에의 영향

○ 원유 연지급 수입곤란으로 자금난 심화

-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장(L/C)개설 기피로 전신환 송금(T/T) 방식에 의한 수입비중이 늘어나 수입대금의 조기결제가 늘어나고 있음
- 이에 따라, 기존 유전스 만기자금 결제시기와 현금결제가 중복됨으로써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추가 수입대금결제 부담액은 12월

에 4.8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.

○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와 국내유가 상승 요인

-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은 원유도입비 및 유전세 금융에 따른 환차손을 크게 증가시켜 정유업계의 자금부담을 심화시키고 국내유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.

○ 석유 수급상의 영향

- 아직까지는 금융위기 및 정유업계의 자금난이 원유도입 및 국내 석유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음.

• 원유 도입분중 69.4%(97.1-10)가 장기계약에 의해 도입되고 있고, 연말까지의 원유 도입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적계약 완료

- 다만, 신용장 개설 곤란 및 정유업계의 자금난이 지속될 경우 원유 도입의 어려움으로 국내 석유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.

2. 대책

1) 정유업계의 자금난 해소방안 협조(재경원) 요청

○ 가용외화자금을 원유 수입대금 결제용에 사용토록 요청(외화대출)

○ 자금난을 겪는 정유사에 대해 해당 주거래은행의 신용장 개설 및 대출 원활화

○ 현행 특소세(교통세) 납부기한을 판매후 45일에서 75일로 연장

- 기대효과: 3,500억원의 자금수지 개선 및 연간 40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

2)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검토

○ 현재 원유를 수입한 경우 통관시에 석유수입부과금(1.7\$/B)을 부과하고 있으나('97.12.22 시행)

- 12월 하순부터 1개월간 8천만배럴의 원유도입분에 대한 수입부과금 징수를 약 2개월 정도 연기하여 자금부담 완화(고시제정)

- 기대효과: 약 2,000억원 정도의 자금부담 이월효과

3) 민간의 석유비축의무 하향조정 및 순수비축분에 대한 부과금 면제 추진

○ 현재 전년도 내수 판매량의 33일분을 비축토록 하고 있는 민간 비축의무량을 30일로 하향조정하고 6일분에 대해서는 부과금 면제(고시개정)

- 통산부 고시 제 1997-208호('97.12.26): '98.1.1 시행

- 기대효과: 원유도입비용 1,080억원 절감 및 부과금 180억원 면제

4) 기타 검토사항

○ 정유사의 신용장 개설 중단시 정부투자기관인 유개공의 L/C 개설 및 원유도입 대행 검토

5) 석유수급 안정화 대책

○ 일부 석유수급 차질 발생시 타사의 긴급수입 및 정유사간 제품 유통

- 정유 5사의 재고량 활용 및 수출분을 내수에 전용

○ 수급차질상황 심화시 석유소비 절약 강화 및 정부 비축유 방출 